

투자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등급)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5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5호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5호
2. 집합투자업자 명칭: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3. 판 매 회 사: <http://www.franklintempleton.co.kr> 및 <http://dart.fss.or.kr> 참조
4. 작성 기준일 : 2013년 3월 31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3년 5월 3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 기간) :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http://www.franklintempleton.co.kr>),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기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제6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붙임] 용어풀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5 호 (펀드코드:20063)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 조좌

주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franklintempleton.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5 호 (펀드코드:20063)

기준	집합투자업자	법정분류	특수형태	투자기구	주된 투자대상자산	운용규제
내용	프랭클린템플턴	증권	-	투자신탁	주식	해당사항없음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 자	내 용
1999 년 1 월 11 일	최초설정
2005 년 6 월 7 일	약관 변경 : Late Trading 반영 등
2006 년 12 월 20 일	약관 변경 : 표준약관 개정사항 반영 등
2008 년 9 월 29 일	펀드명 변경(舊 템플턴 그로스 주식투자신탁 5)
2008 년 10 월 27 일	약관 변경 : 장기투자세제혜택을 위한 운용대상의 명칭 명확화
2009 년 4 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주식 투자신탁 5 →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5 호
2012 년 9 월 19 일	채권평가회사 추가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종료일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5 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여의도동, CCMM 빌딩) 3 층 (대표전화 02-3774-0600)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13.03.31.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비고
			운용중인 집합투자기 구 수	운용자산 규모(원)		
강정구	1968년	책임운용전문인력	19 개	6,020 억	동양종합금융 (1994-2000) 삼성증권 (2000) AIG 자산운용 (2000-2008)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	-

					(2008-2009) 당사 주식운용팀 (2009-현재)	
오성식	1963년	부책임용 전문인력	19 개	6,020 억	한국투신운용 (1989-1996) 삼성투신운용 (1996-1999) 리젠트자산운용 (1999-2001) 당사 주식운용 CIO (2002-현재)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없음

주 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팀이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 투자신탁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저평가된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산증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한도 (%)	주요 내용
1.	국내주식	60% 이상 단,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신주인수권 및 공모주 포함)에 60% 이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2.	채권	40% 이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 (단, 주식관련사채권 및 신용평가등급 A- 미만 사채권 은 제외)
3.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단,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에 한함.)
4.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5.	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6.	수익증권	5% 이하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에 대하여는 30%까지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189 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 196 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함)

		투자 가능)	
7.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 총액의 50%이하	
8.	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 이하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채권관련 파생상품
9.	장외파생상품	아래 나.의 법규상 투자제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주식, 채권관련 파생상품
10.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 이하	
11.	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12.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운용	
13.	기타 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5 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의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나.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다.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라.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위의 1~5 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 내용	예외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 자산총액의 4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직접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 제5호가목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당해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매매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0%(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 개월간
이해관계인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장기적으로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그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 장기적으로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자본이익을 추구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운용합니다.
- 60 여년 간의 운용역사로 탁월한 성과를 입증받아 온 존 템플턴경의 투자철학인 **Bottom-up** 방식에 의거하여 개별종목 중심으로 투자하며, 미래의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거래되고 있는 종목에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KOSPI (100%)

* KOSPI :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하는 한국종합주가지수로 국내 주식가격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 자 위 험 의 주 요 내 용
시장위험 및 개별 위험	✓ 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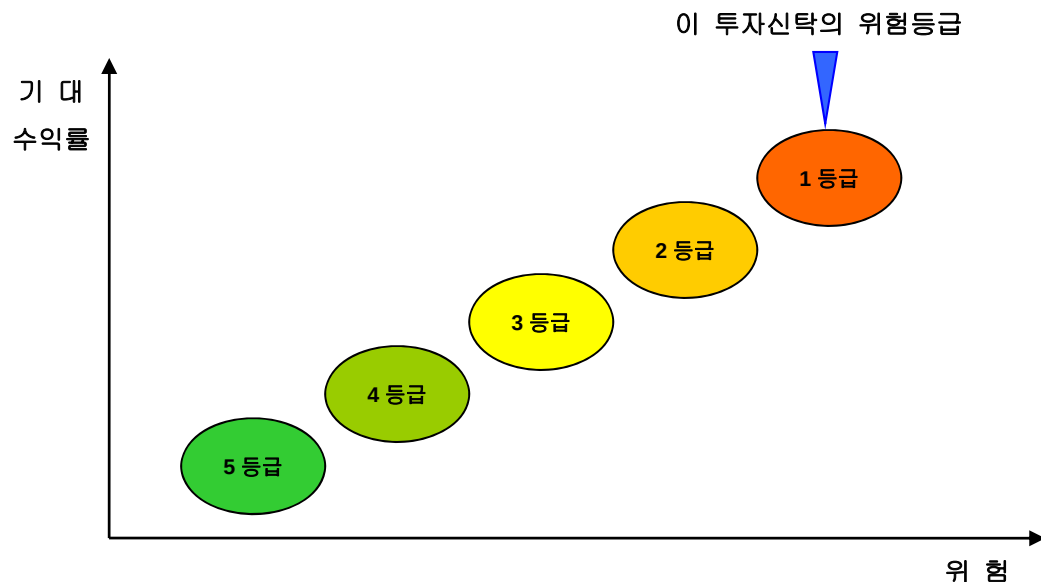
나.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 자 위 험 의 주 요 내 용
투자신탁 규모변동에 따른 위험	✓ 당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에 따른 위험	✓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 수익자가 중도 환매하는 경우에는 국제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국제금융결제와 관련한 송금 지연 등 사유발생시 환매금액 지급연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조기환매위험	✓ 수익자가 환매요청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며 동 환매수수료는 신탁재산으로 귀속됩니다.

다.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당사가 정의한 5가지 투자위험등급들 중에서 1등급에 해당하는, 당사의 투자위험등급상 가장 높은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으므로, 당사의 투자신탁에 투자하려는 고객들중에서 가장 높은 투자위험 성향을 보이는 고객들에게 적합하며, 우리나라 주식의

변동성을 이해하고 그 변동성의 대가로 주어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주식의 기대수익을 추구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식 투자의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되, 국내주식 대비 해외주식 투자시의 투자위험 차이를 이해하고 해외주식 투자시의 그러한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더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당사 자체 투자위험등급기준]

위험등급	상대적 위험수준 ^{주1)}	상세설명
1 등급	매우높은위험	당사의 펀드들을 예상수익률변동성을 참조하여 투자위험을 분류할때 5 가지 위험등급 분류중 가장 높은 위험에 해당하는 등급입니다. 펀드의 자산을 주로 국내주식, 해외주식 또는 국내외 주식에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투자위험 등급입니다. 주식이 아닌 위험 자산에 주로 투자하더라도 예상수익률변동성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경우와 비슷할 경우 이 위험등급에 해당됩니다. 주식에 주로 투자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당사의 경우 대체로 80% 이상 주식에 투자합니다. 이 위험등급에 해당되는 개별 펀드들의 예상수익률변동성은 아래의 다른 위험등급의 경우 보다 훨씬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Emerging Markets), 선진국이 아닌 시장, 특정 섹터나 업종들, 코스닥시장처럼 특정목적 가진 시장 등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들은 국내시장이나 선진국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들보다 예상수익률변동성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2 등급	높은위험	당사의 펀드들을 예상수익률변동성을 참조하여 투자위험을 분류할때 5 가지 위험등급 분류중 두번째로 높은 위험에 해당하는 등급입니다. 주로 주식과 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에 함께 투자하되, 주식에의 투자비중이 대체로 40~60% 내외인 주식혼합형펀드들이 이 등급에 해당합니다.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주식과 채권의 비중이 그 정도일 때에 해당됩니다. 주식 또는 채권이 아닌 자산들에 주로 투자하더라도 그러한 주식혼합형펀드와 유사한 예상수익률변동성을 보인다면 이 위험등급에 해당됩니다.

3 등급	중간위험	당사의 펀드들을 예상수익률변동성을 참조하여 투자위험을 분류할때 5 가지 위험등급 분류중 세번째로 높은 위험에 해당하는 등급입니다. 주로 주식과 투자등급 이상의 채권 및 유동성자산들에 함께 투자하되, 주식에의 투자비중이 대체로 30% 이하인 채권혼합형펀드, 투자등급 이하 국내채권 등예의 투자를 주 목적으로 하는 국내 고위험고수익채권형펀드, 해외의 투자등급 이상의 채권들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채권형펀드들이 이 등급에 해당합니다. 투자등급 이상의 채권에 주로 투자한다는 것은 반드시 투자등급 이상의 채권에만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 펀드가 투자등급 이하의 채권을 보유할 수도 있으므로 이점은 증권신고서의 관련 내용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4 등급	낮은위험	당사의 펀드들을 예상 수익률변동성을 참조하여 투자위험을 분류할때 5 가지 위험등급 분류중 네번째로 높은 위험에 해당하는 등급입니다. 투자등급 이상의 우리나라 채권과 유동성 등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채권형펀드들이 이 등급에 해당합니다. 예상치 못한 투자등급의 하락으로 일시적으로 투자등급 이하의 채권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도 이 위험등급에 해당됩니다.
5 등급	매우낮은위험	당사의 펀드들을 예상수익률변동성을 참조하여 투자위험을 분류할때 5 가지 위험등급 분류중 가장 낮은 위험에 해당하는 등급입니다. 국공채 또는 높은 투자등급의 채권이면서 만기가 매우 짧은 채권들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들이 이 등급에 해당합니다. 주로 단기집합투자기구(MMF)들이 이 등급에 해당됩니다. 은행 CD 와 비슷한 예상수익률변동성을 가진 단기채권형펀드들도 이 등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1) 당사의 위험등급은 펀드들의 예상수익률변동성을 참조하여 분류한 것입니다.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의 표현에서 "낮은", "매우낮은" 등의 의미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당사의 5가지 위험등급들을 서로 비교할 때에 그 상대적 높고 낮음을 의미합니다. "매우낮은위험"에 해당하는 위험등급 5의 경우에도 투자시기와 투자기간에 따라 투자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2) 퇴직연금 등의 연금형 펀드들과 같이 고객의 투자기간이 충분히 길고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펀드들의 경우, “장기투자 및 적립식 투자방법에 따라 수익률 변동성이 낮아지는 효과”를 반영하여, 상기에 의한 등급보다 낮은 위험 등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3) 상기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의 내부기준에 대한 예시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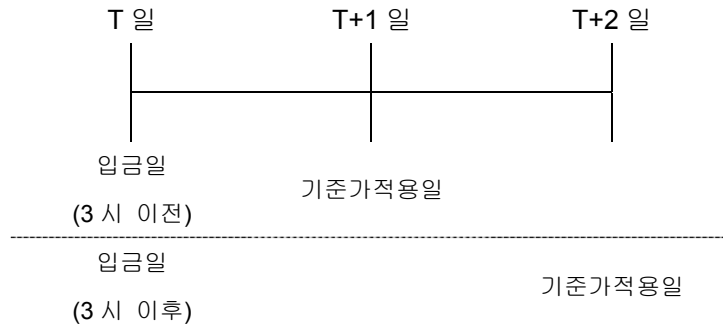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5 시(오후 3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15 시(오후 3 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다) 다만,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1,000 원)을 적용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1940년 투자회사법(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을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

“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I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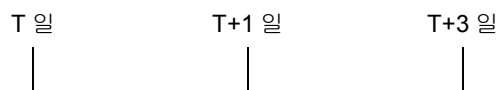
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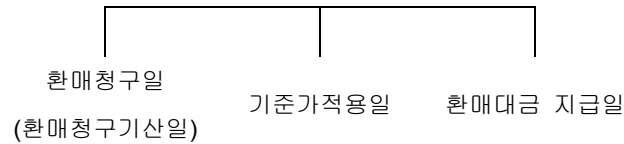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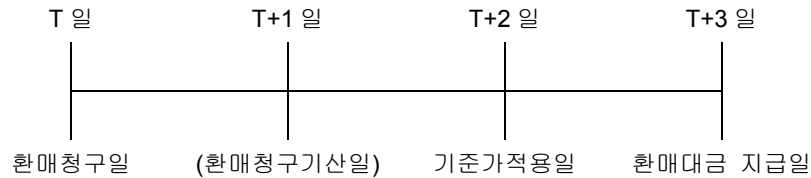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5 시(오후 3 시) 이전에 환매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2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나) 15 시(오후 3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3)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6)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 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 (15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 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9)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산출
기준가격 산정주기	매일 산정
기준가격 공시시기	매일 공고·게시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시. 다만, 최초설정일[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 좌를 1 원으로 하여 1,000 원으로 공고. - 판매회사 영업점 및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구분	내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가격정보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 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 일 이상 한국거래소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합니다) 평가기준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합니다)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로 표시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계산시 알 수 있는 그 주식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거래소의 최종시가로 평가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외국의 경우 가격 계산시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최종시가)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해당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 외화표시증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 자산을 한국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환율정보 제공계약을 체결하는 서울외국환중개회사에서 제공하는 아래 각호의 재정된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1. 재정된 매매기준율은 매 영업일마다 대상통화의 최근 국제시세(15 시 40 분대)를 반영하여 산출하며, 대상통화의 국제시세는 Reuters, Informax 등에서 제공하는 시세를 참조하여 결정 2. 재정된 매매 기준율 산출에 필요한 달러, 원 현물환율은 매매기준율 산출, 제공하는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서 거래된 당일 최종시가를 적용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①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②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 이내	매입시
환매수수료	-	환매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해당 범위 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집합투자업자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7500%
판매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7500%
신탁업자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5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200%
기타비용(사유발생시) ¹⁾	순자산총액의 연 0.0059%
총 보수·비용 비율	순자산총액의 연 1.5759%
증권거래비용 ²⁾	순자산총액의 연 0.5374%

주1) 기타비용은 증권에 대한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13년 3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 전체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치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2013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 보수·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비용 ¹⁾

(단위: 원)

투자기간	1 년차	3 년차	5 년차	10 년차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62,841	615,488	1,004,281	2,159,662
선취판매수수료: 99,010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 보수·비용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에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 으로 함.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동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간 이자, 배당 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1.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한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으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모든 거주자(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연금저축 계좌 제외)

가. 기존 적립식 펀드 가입자가 기존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년 이상 적립기간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나.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립식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경우

2.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3.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다수 계좌 가능)

4. 소득공제 비율

가. 1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나. 2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다. 3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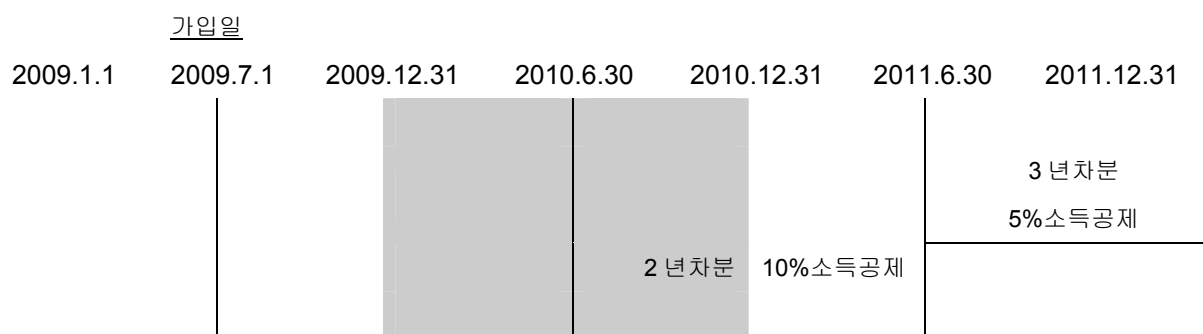
5. 소득공제 사례

투자자 A가 2009.7.1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가. 2009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까지의 불입액의 20%

나. 2010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까지의 불입액의

20%+2010.7.1~12.31까지의 불입액의 10% ☞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1년차분	20%소득공제
------	---------

※상기 적립식 주식형 펀드의 세제우대는 2009년 03월 20일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이며 향후 동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세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세제우대에 대한 설명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그 내용의 일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제11기, 제12기, 제13기의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대차대조표	제 13 기	제 12 기	제 11 기
	2013-01-10	2012-01-10	2011-01-10
운용자산	56,442,752,256	67,225,103,182	77,398,883,507
증권	53,839,309,050	65,242,837,080	76,387,975,450
파생상품			
부동산/실물자산			
현금 및 예치금	3,443,206	1,082,265,382	10,908,057
기타 운용자산	2,600,000,000	900,000,720	1,000,000,000
기타자산	881,248,814	541,366,746	1,625,974,622
자산총계	57,324,001,070	67,766,469,928	79,024,858,129
운용부채			
기타부채	1,408,872,709	284,499,391	16,496,329,016
부채총계	1,408,872,709	284,499,391	16,496,329,016
원본	63,824,921,811	75,233,078,603	62,528,529,113
수익조정금			
이익잉여금	-7,909,793,450	-7,751,108,066	
자본총계	55,915,128,361	67,481,970,537	62,528,529,113
손익계산서	제 13 기	제 12 기	제 11 기
	2012-01-11~ 2013-01-10	2011-01-11~ 2012-01-10	2010-01-11~ 2011-01-10
운용수익	160,290,903	-5,817,516,876	21,087,217,765
이자수익	75,784,451	104,592,412	62,788,151
배당수익	514,500,608	802,608,170	980,235,317
매매/평가차익(손)	-430,001,321	-6,724,755,382	20,042,145,315
기타 수익	7,165	37,924	2,048,982
운용비용	1,229,810,281	1,602,757,977	2,110,317,006
관련회사 보수	954,273,058	1,149,238,791	1,444,806,013
매매수수료	4,247,680	4,680,176	4,856,320
기타 비용	271,289,543	448,839,010	660,654,673

당기순이익	-1,069,519,378	-7,420,274,853	18,976,900,759
매매회전율(%)	156	214	247

※ 회계감사인인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정식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5 호								
2010-01-11~2011-01-10	1,019	1,019	443	450	837	880	625	778
2011-01-11~2012-01-10	625	625	509	504	382	380	752	675
2012-01-11~2013-01-10	752	675	76	67	190	172	638	559

재투자

(단위:원)			
집합투자기구	기간	기간중 재투자	
		좌수	금액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5 호	2010-01-11~2011-01-10	2,634,026,480	2,634,026,480
	2011-01-11~2012-01-10	15,248,337,494	15,248,337,494
	2012-01-11~2013-01-10	0	0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수익률은 신고서 또는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과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 연평균수익률

(단위:%)

집합투자기구	기간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 이후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5 호		(12.04.01~ 13.03.31)	(11.04.01~ 13.03.31)	(10.04.01~ 13.03.31)	(08.04.01~ 13.03.31)	(99.01.11~ 13.03.31)
	집합투자기구	-8.78	-8.45	2.65	3.28	14.41
	비교지수	-0.45	-2.45	5.8	3.31	8.34

주1) 비교지수 : KOSPI (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집합투자기구	기간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5 호		(12.04.01~ 13.03.31)	(11.04.01~ 12.03.31)	(10.04.01~ 11.03.31)	(09.04.01~ 10.03.31)	(08.04.01~ 09.03.31)
	집합투자기구	-8.78	-8.13	29.04	46.15	-25.65
	비교지수	-0.45	-4.4	24.45	40.34	-2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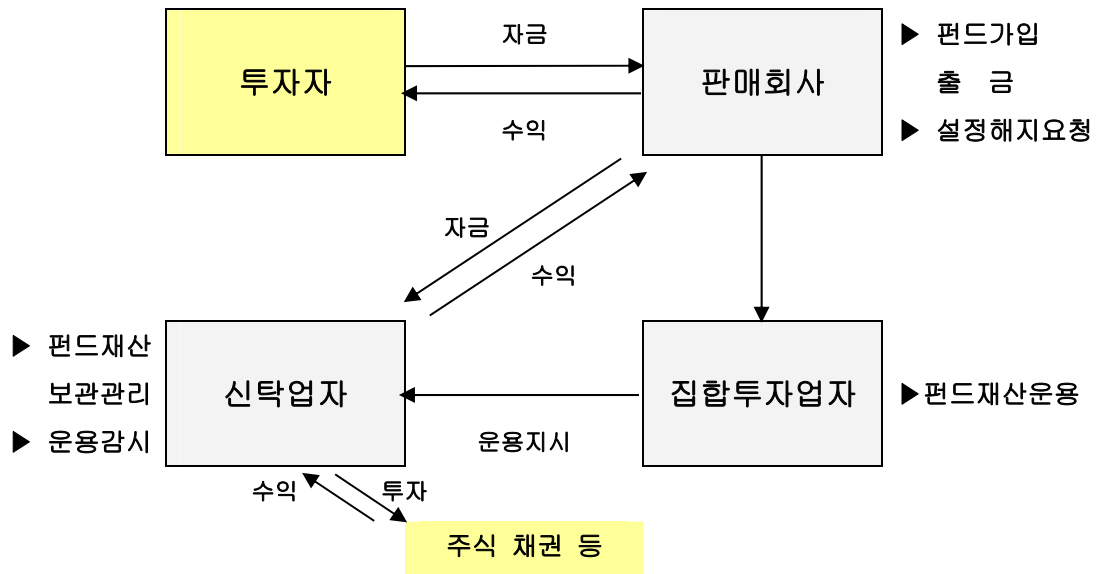
주1) 비교지수 : KOSPI (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자산구성 현황

펀드분기말 일자: 2013-01-10 (단위:백만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원화	53,839	0	0	0	0	0	0	0	0	2,604	881	57,324
	(93.9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54)	(1.54)	(100.00)
합계	53,839	0	0	0	0	0	0	0	0	2,604	881	57,324
	(93.9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54)	(1.54)	(100.00)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프랭클린템플턴 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여의도동, CCMM 빌딩) 3 층 (대표전화 02-3774-0600)
회사연혁	1988 년 3 월: 쌍용투자자문회사 설립 1997 년 2 월: 프랭클린템플턴그룹과 합자, 쌍용템플턴 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1997 년 2 월: 투자신탁운용업 허가 1999 년 3 월: 템플턴 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2000 년 7 월: 프랭클린템플턴그룹이 회사지분전부인수 (100% 외국계 투신운용사가 됨) 2000 년 9 월: 프랭클린템플턴 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자본금	385 억
주요주주현황	Templeton Investment Counsel, LLC : 51% Templeton Asset Management Limited (Labuan) : 49%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①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②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③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 ④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원)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목	2012.3.31	2011.3.31	항목	2012.3.31	2011.3.31
현금및예치금	32,171,443,918	20,833,844,335	영업수익	29,477,335,503	28,458,955,160
유가증권	330,900,000	330,900,000	영업비용	32,022,623,928	32,040,294,957
유형자산	449,838,885	557,222,536	영업이익(손실)	(2,545,288,425)	(3,581,339,797)
기타자산	9,497,367,009	10,204,974,815	영업외수익	-	-
자산총계	42,449,549,812	31,926,941,686	영업외비용	-	-
예수부채	587,369,885	593,527,037	경상이익(손실)	(2,545,288,425)	(3,581,339,797)
기타부채	10,080,222,839	7,006,169,136	특별이익	-	-
부채총계	10,667,592,724	7,599,696,173	특별손실	-	-
자본금	35,000,000,000	25,000,000,000	당기순이익(손실)	(2,545,288,425)	(4,262,292,816)
이익잉여금	(3,218,042,912)	(672,754,487)			
부채와 자본총계	42,449,549,812	31,926,941,686			

라. 운용자산규모

(2013년 3월 29일 현재 기준, 억원)

종류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	부동산	특별자산	재간접	실물	총계
수탁고	6,993	2,918	9,409	0	0.00	0.00	0	4,451	0	23,770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 02-317-2114)
회사연혁 등	www.kbstar.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①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②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③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④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⑤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⑥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⑦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⑧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⑨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함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절한지 여부/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절한지 여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절한지의 여부/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SC 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번지 하나대투증권빌딩 18 층, (우)150-705 (대표전화 02-2014-2114)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1999 년 11 월 3 일 설립 2000 년 11 월 2 일 등록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 채권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02-3215-140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bond.co.kr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운니동, 삼환빌딩) 4 층 (대표전화 02-399-335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ap.com

회사명	나이스채권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 길 19, 4 층 (대표전화 02-398-390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nicepricing.co.kr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해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법 제188조제2항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②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
- ④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②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③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을
- 그 밖에 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③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④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②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③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④ 법 제247조제5항에 정해진 사항
- ⑤ 그 밖에 법시행령 제270조제2항에 정해진 사항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⑥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⑦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franklintempleton.co.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④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6 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
2.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 포함)의 사본
 - 가.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 제외)
 - 나. 신탁업자
 - 다. 일반사무관리회사(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제출시 추가서류]

3. 예비투자설명서
4. 간이투자설명서

[붙임] 용어풀이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형 펀드로서 집합투자재산의 40%를 주식, 채권, 특별자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부동산(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익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업자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으로,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말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 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환매조건부 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고객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5호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에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판매직원 성명 서명)---(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회사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5호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고객 확인 사항	고객기재사항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받았음)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적합함)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제공받고 들었음)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해당사항 없음)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에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들었고 권유받았음)

년 월 일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